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63 발의연월일: 2021. 11. 5.

발 의 자:김영식·박성중·김정재

김상훈 · 주호영 · 태영호

최형두・金炳旭・이종성

김용판 · 박성민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최근 기업 정보 유출,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 및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사사고의 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등 후속 대응조치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법상 실효성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유사한 침해사고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대응조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.

한편, 대량의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어 국민의 정보 유출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에 대한 차단 근거가

미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스미싱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중지를 요청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근거를 마련함(안 제47조의6 신설).
- 나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,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공유하도록 함(안 제48조의3).
- 다.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시 관련 자료 보전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(안 제48조의4).
- 라. 스미싱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전화번호 차단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49조의2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6(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)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,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(이하 "정보보호 취약점"이라 한다)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·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"를 "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후단 중 "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전단"을 "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가 있으면 전단"으

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이 공유하여야 한다.

제48조의4제1항 중 "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"를 "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발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"를 "발생한 경우. 제2항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"를 "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 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"로 하고.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"를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 책 마련을 하기"로,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 자"를 "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"로, "제2항"을 "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2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 4항"을 "제5항"으로 하고.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. "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" 를 "구성·운영,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·절차"로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49조의2제3항제3호 중 "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 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"을 "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접속경로의 차단

나.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

다.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의 통지

-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제3항제7호 중 "평가·인증"을 "평가·인증,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인증,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"으로 한다.

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2호 중

"제48조의4제4항"을 "제48조의4제5항"으로 한다.

11의3.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
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7조의6(정보보호 취약점 신고
	자에 대한 포상) ① 정부는 침
	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
	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,
	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
	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
	(이하 "정보보호 취약점"이라
	한다)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
	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
	<u>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
	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
	<u>령령으로 정한다.</u>
	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
	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
	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	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
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	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
<u>해당하는 자</u> 는 침해사고가 발생	
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	
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	
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	
이 경우 <u>「정보통신기반 보호</u>	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
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	사고 통지 또는 신고가 있으면

가 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- 1. 2. (생 략)
- ② (생략)

<신 설>

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 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 산을 방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u>전단</u>	 	 	 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 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없 이 공유하여야 한다.

등) ① -----

-----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 여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---.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 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 생하면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 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· 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그 침 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할 수 있 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2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

권고할 수 있다.
<u>③</u>
<u>발</u>
생한 경우, 제2항에 따른 원인
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
요하면
<u>4</u>
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
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
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
중대
0 1
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

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수 있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.
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 민·관합동조사단은 제4항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 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침해 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 며,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 시 파기하여야 한다.
- ⑥ 제2항에 따른 민·관합동조 사단의 구성과 제4항에 따라 제 출된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 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49조의2(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 보의 수집금지 등) ①·② (생략)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

<u>⑥</u>
<u>제5항</u> -
·
<u> প্রই</u>
<u>구성 · 운영, 제5항에 따라</u>
제출된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
<u>방법•절차</u>
<u>.</u>
제49조의2(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
보의 수집금지 등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

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전부 또 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 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한 긴급조치

<신 설> <신 설>

<신 설>

④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는 일부를 -----

가. 접속경로의 차단 나. 제1항의 위반행위에 이용 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 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 다.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 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의 통지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 ① \cdot ② \mid 제52조(한국인터넷진흥원) ① \cdot ②

(새	략)
10	-

-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~ 6. (생략)
- 7.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, 정보보호시스템 <u>평가·인증</u> 등 정보보호 인증·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

8. ~ 22. (생략)

④ ~ ⑦ (생 략)

제76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·2. 삭 제 2의2. ~ 11의2. (생 략) <신 설>
- 12. <u>제48조의4제4항</u>에 따른 사 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 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. ~ 25. (생 략)

④ (생략)

(현행과 같음)	
③	-
1. ~ 6. (현행과 같음)	
7	_
<u>평</u> 가·인증, 정]
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	 -
호인증, 소프트웨어 개발보인	<u>-</u>
진단	
8. ~ 22. (현행과 같음)	
④ ~ ⑦ (현행과 같음)	
제7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고	ŀ
같음)	
③	_
	-
2의2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	
11의3.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	<u>-</u>
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니	<u> </u>
거짓으로 제출한 자	
12. 제48조의4제5항	-
	-
12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	
④ (현행과 같음)	